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2. .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11	이만희 의원	2024. 7.24.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4.) 상정・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13	위성곤 의원	2025.11. 5.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28.)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4.) 상정・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법률 제 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3.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2.·3.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 략)	제22조(과태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